

「2018회계연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19년 4월 1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2018 회계년도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동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A)	수납액 (B)	B/A (%)	지출액 (C)	C/A (%)	차기이월액 (D)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7,796,335	29,942,307	107.72	22,363,960	80.46	7,578,347	27.26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B/A (%)	수납액 (C)	C/A (%)	잉여금 (D)=(C)-(A)	미수 납액 (E)=(B)-(C)	E/A (%)
합계	27,796,335	30,918,527	111.23	29,942,307	107.72	2,145,972	976,220	3.51
현년도	24,334,486	27,295,806	112.17	26,419,196	108.57	2,084,710	876,610	3.6
전기미수금	150,000	310,872	207.25	211,262	140.85	61,262	99,610	66.4
전기이월액	3,311,849	3,311,849	100	3,311,849	100	-	-	-

○ 세출결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불 용 액 (D)	비 고	
			B/A (%)	C/A (%)		D/A (%)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27,796,335	22,363,960	80.46	5,228,384	18.8	203,991	0.74

○ 차기이월금 처리상황

(단위:천원)

회계별	구분	계	건설개량 이 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불용액)
평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7,578,347	2,986,999	386,302	1,855,083	2,349,963

3. 검토결과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기이월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796,335	29,942,307	22,363,960	7,578,347	

- 2018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은 27,796,33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9,942,307천원, 세출결산액은 22,363,960천원이고, 차기이월액은 7,578,347천원임.

□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796,335	30,918,527	29,942,307	976,220	

- 세입결산액은 29,942,30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율은 107.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8%이며, 미수납액은 976,220천원임.

□ 세출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7,796,335	22,363,960	5,228,384	203,991	

- 세출결산액은 22,363,960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80.5%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28,38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8%이며 불용액은 203,991천원이 발생하였음.

□ 201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총괄

- 수입예산 결산액은 30,919백만원으로
수익적 수입 7,412백만원, 자본적수입 19,650백만원,
이월재원 3,857백만원임.
- 지출예산 결산액은 22,364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6,056백만원, 자본적 지출 12,846백만원
이월예산 지출 3,461백만원임.
- 자금결산 결과는
전기이월액 9,802백만원, 수입 20,140백만원
지출 22,364백만원, 차기이월액 7,578백만원임.

□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 자산총계는 243,290백만원으로 전기대비 2.9%인 6,902백만원이 증가함.
 - ▶ 유동자산은 전기대비 1,641백만원이 감소한 8,877백만원으로 예산운용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 ▶ 비유동자산은 전기대비 8,544백만원이 증가한 234,412백만원으로 방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관령식수전용댐공사, 용평.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등의 건설중인 자산의 구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부채총계는 전기대비 78백만원이 감소한 5백만원이며,
- 자본총계는 243,284백만원으로 전기대비 6,98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시설분담금 증가가 주요 원인임.

□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 총수익은 7,436백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7.5%증가한 6,793백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전기대비 46.7% 감소한 643백만원임.
- 총비용은 12,874백만원으로
매출원가는 전기대비 214백만원이 증가한 8,362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대비 439백만원이 증가한 4,512백만원임.
- 5,43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적 요	금액(천원)	연간조정량(m ³)	m ³ 당요금(원)
급수수익(상수도요금수입)	6,440,474	4,201,138	1,533.03
총괄원가	21,117,793	4,201,138	5,026.68
톤당 손실			3,493.65
요금현실화율(%)			30.50
요금인상요인(%)			227.89

- 연간조정량은 4,201,138톤이고, 상수도요금수입은 6,440,474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533.03원임.
- 수돗물 생산의 총괄원가는 21,117,793천원이며,
톤당 원가는 5,026.68원으로, 결함액은 14,677,319천원이며
227.89%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
- 연간생산량은 6,253,183톤이며, 연간조정량은 4,201,138톤으로
유수율은 67.18%로 전기 대비 9.54% 감소하였음.

4. 검토의견

-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업무를
2012년 10월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과 산간 농촌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공기업 경영면에서 불리한 여건입니다.
- 2018년 말 행정구역내 총인구는 42,610명이고 급수인구는 34,928명
으로 급수 보급율은 81.9%입니다. 수돗물은 1일 평균 17천톤, 연
간 총 6,253천톤을 생산하며,
총괄원가는 21,118백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5,026.68원,
공급단가는 톤당 1,533.03원으로 요금인상요인은 227.89%입니다.

- 2018년도 급수수익은 6,440백만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30.5%를 회수하고 있으며, 총괄원가 중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영업비용은 11,861백만원으로, 급수수익으로는 영업비용의 54.3%만 회수하고 있어 최소한의 영업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영업비용 절감과 수용가 미수금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기에 비해 당기 순손실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노후화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의 하락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54.8%를 차지하고 있고,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수선교체비등의 증가가 당기 순손실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우수율이 2017년에 이어 당기에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량 증가와 맞물려 연간 생산량 증가폭에 비해 조정량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우수율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보면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평창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18년 12월 31일과 201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지방공기업법,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결산지침 및 평창군상하수도 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채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